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496호)

심사보고서

1998. 8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8. 18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8. 19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8. 25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기구·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실과간 통폐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○ 실과 통폐합

- 기획감사실 + 홍보업무 → 기획감사실
- 내무과 + 민방위계, 병무계 업무 → 행정과
- 지적과 + 민원처리계, 120기동대 업무 → 민원봉사과
- 환경과 + 산림과 → 환경녹지과
- 산업과 + 축산과 + 농촌지도소 → 농업기술센터
- 건설과 + 재난관리계 업무 → 건설과
- 지역개발과 + 기술지원계 업무 → 도시과

○ 실과명칭 변경

- 재무과 → 세무회계과

○ 실과 신설

- 대외협력 + 사회봉사 + 문화관광 + 정책개발 → 지역협력과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1세기 본격 지방자치화,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과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중심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자치경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
- 정부의 지방행정기구·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실과간 통폐합, 명칭변경, 신설 등 관련 조례를 변경하려는 내용과
- 구조조정에 따른 과의 명칭변경으로 관련된 다른 조례변경을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실과별 세부 사무분장,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부칙 제2조제9항 산업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 이유는
- 답 : 본청 실과장이 형평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기 위함이며, 간부회의 및 결재라인 상황조정 등으로 과장의 위상격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문 : 지역협력과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지
- 답 : 21세기 지방화, 정보화에 대비하여 정책기획 조정이 필요함.
- 문 : 문화업무가 지역협력과 소관으로 전문성 결여는 없는지
- 답 : 전문성있는 해당 공무원으로 배치할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8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